

충청북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강현삼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2년 6월 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·추진하여 선진복지도 실현
- 진폐로 추정되는 산재불인정 받고 있는 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 추진

4. 주요내용

-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
-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시책 추진(안 제3조)
-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수행 경비 지원(안 제5조)
- 진폐근로자의 중복지원 금지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진폐로 추정되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

도내 진폐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도내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과 시행계획 수립·시행 의무를 명시하였고,
-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, 주거환경개선사업, 진폐단체 운영지원사업 등 사업수행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사료됨

□ 중복 진폐환자 현황

○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관할

(2012.5.9. 현재)

지역별	계	진폐환자판정	의증환자
충주, 제천 음성, 단양	176명	170명	6명

※ 타 시·도출신 포함 198명 : 입·통원 192명(치료비 전액지원), 의증 6명

○ 지원대상 : 12명(의증환자6, 배우자6), 비용추계(6,000천원 정도 : 12명x50만원)

- 192명은 병원비, 통원치료비, 등급별 위로금 등이 지원됨.

□ 타 시도 지원현황

○ 의료비지원 현황

시도별	지원대상	지원액	비고
강원도	7,250명(진폐의증재가환자 4,052명, 배우자 3,198명)	진료기관내과 외래진료비 요양급여중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입원비 년1회 20만원 한도 지원(도비50%, 시군비50%)	
충청남도	1,450명(진폐의증재가환자 771명, 배우자 679명)	진료기관 외래진료비 요양급여중 본인 부담금 지원1인당 년 48만원 한도 (도비20%, 시군비80%)	

○ 단체지원 현황

시도명	단체명	지원내용	사업내용
강원도	(사)전국진폐재해자협회	단체별 년 2천만원 (도비50%, 시군비50%)	- 진폐관련 상담소 운영비, 상담수당 등 - 사업대상 : 전국회원 (지회포함)
	(사)한국진폐재해자협회		
	(사)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		
	광산진폐권익연대		

※ 단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, 진폐단체본부는 모두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음. 사업으로는 전국회원에 대한 진폐환자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강원도청에서는 단체본부만 지원하고 있음.

- 충청남도는 지회만 있어 도 지원이 없는 실정임. 지회관할 시에서 운영비 2백만원 지원(보령시)

도내 의료기관별 진폐요양환자 현황

(2011. 6. 30 기준, 단위 : 개, 명)

의료기관명	병상수	계	입 원	통 원
계	198	204	193	11
충주의료원	51	60	51	9
자산의료재단 제천 서울병원	97	87	85	2
단양 서울병원	50	57	57	-

도내 진폐관련 배출업소 현황

(단위: 개소)

시군별	계	활석, 규석, 금·은, 철	석회 제 조	시멘트 제 조	비금속 광물 제 조	토사석 채취	기타
총계	35	7	7	6	4	5	6
충주	7	7					
제천	9		1	1	4		3
청원	2			2			
진천	2						2
괴산	5					5	
음성	1						1
단양	9		6	3			